



**서식2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**

**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**

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(유사사업 참여여부, 과세정보 등)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·부정 수급 여부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 활용(설문조사 포함) 등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계좌정보 등	동의일로부터 3년

**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**

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
-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: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(유사사업 참여여부, 과세정보 등)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·부정 수급 여부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 활용(설문조사 포함) 등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계좌정보 등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: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**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 및 제24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(유사사업 참여여부, 과세정보 등)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·부정 수급 여부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 활용(설문조사 포함) 등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번호), 계좌정보 등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3년

※ 신청인은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

※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
성명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<b>서식3</b>	<b>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공통)</b>
담당 직원 확인사항	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, 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, 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<p>아래 본인은 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'담당 직원 확인사항'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모두 동의합니다.</b>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예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아니오</p>	

<b>서식4</b>	<b>부정수급 관련 약약서</b>									
<p>① 아래 약약인은 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약합니다.</p> <p>② 아래 약약인이 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, 증빙서류,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위반행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제재부가금 부과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원금 수령자</td> <td>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</td> <td>500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3)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</td> <td>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만약,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모두 확인하였습니다.</b>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예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아니오</p>		구분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	지원금 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	500%		3)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
구분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								
지원금 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	500%								
	3)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100%								

<b>서식5</b>	<b>오지급시 반납 약약서</b>
<p>아래 본인은 지원받은 「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에 대해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</li> <li>2.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</li> <li>3. 지원 제외 직종임에도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</li> <li>4.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모두 동의합니다.</b>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예    <input type="checkbox"/>아니오</p>	

2022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신청인 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고용노동부장관    귀하